

##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

※관리번호

- 사업자등록번호

- -

※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.

법인명(상호)

법인소재지(주소)

대표자성명  
(주민등록번호)

전화번호

## 환급신청내역

| ①<br>종목명<br>(액면가액) | ②<br>종목코드 | ③<br>취득일 | ④<br>매도일 | ⑤<br>보유기간 | ⑥<br>이자율 | ⑦=①×⑤×⑥<br>보유기간이자상당액 | ⑧<br>세율 | ⑨<br>법인세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( )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환매조건부  
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1. "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"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 3에 따른 "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"를 말합니다.
2. ①종목명란의 (     )에는 액면가액을 적습니다.
3.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적습니다.
4.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.
5. ⑤이자율란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.
6.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(매수법인)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(을)[별지 제10호서식(을)]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(별지 제68호의4서식)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